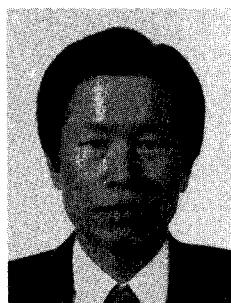


1. 개 요
2 연 협
3 IECEE의 조직과 제도
4 CB Scheme
5 우리나라의 참여

1. 概 要

- 1.1 設立年月日 : 1926년
- 1.2 關係法 : —
- 1.3 適用規格 : IEC, CEE Standards
- 1.4 法的強制性 : 비강제
- 1.5 外國業體에 對한 申請資格 制限 : 없음
- 1.6 認證 所要經費 : 선택하는 인증절차 및 시험기관에 따라 相異함.
(약 1~4백만원)

- 1.7 認證 所要期間 : 3개월 이내
- 1.8 工場検査 : 없음
- 1.9 其他 : 現在 韓國 IECEE委員會(IECEE Council of Republic of Korea)가 IECEE-CB Scheme의 NCB (국가인증기관)이며 주관부서는 생산기술연구원(KAITECH)으로 되어 있음.
KAITECH은 1992년 2월 IEC 950 (정보기기) 규격에 대해 CB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1993년 11월 IEC 65(전자용



장 한 용
공업진흥청 안전관리과장

용기기), IEC 335(전기용용기기) 규격에 대해 CB인증서 발급자격을 획득하였음.

2. 沿革

第一次世界大戰이 終了한 後의 歐洲에서는 戰後의 經濟復興에 편승하여 危險하고 粗惡한 電氣器機가 시중에 돌고, 이러한 製品에 對한 監視의 必要性에 대해서 論亂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1923年以後 다음의 3個國 電力共給事業協會와 製造工業의 代表者間에 會合이 이루어져 多量으로 市販되고 있는 電氣製品의 安定性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에 대한 討論이 이루어졌다.

－ 스웨덴 電力共給事業協會

Svenska Elektricitetsverksforeningen

(Swedish Association of Electricity Supply Undertakings)

－ 독일 電力共給事業協會

Vereinigung der Elektrizitätswerke

(Association of Electricity Supply Undertakings)

－ 네덜란드 電力共給事業經營者協會

Vereniging van Directeuren van Electriciteitsbedrijven in Nederland

(Association of Managing Directors of Electricity Supply Undertakings in the Netherlands)

1926年 電氣器機의 品質表示에 關한 「廣範圍電氣시스템 國際會議」(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rge Electric Systems)의 結果, Installations Fragen Kommission(IFK) (電氣設備問題委員會)가 設立되고, 同年4月 베를린에서 第1回 會議가 開催되고 上記 3개국 및 노르웨이의 代表者가 參加하였다. 그후 IFK에 參加하는 國家가 점차 늘어나 組織

의 目的도 한층 明確하게 定義되고 1938年에는 參加하는 國家는 13개국, IFK에서 사용하는 電氣安全規格도 11規格에 達하였다.

第二次大戰後, 中斷되어 있었던 電氣器機에 對한 安全確保의 活動이 再開되고, 1946年, IFK는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ules for the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CEE) (歐洲電氣器機統一安全規程委員會)로써 再發足하였다. CEE Pub.8 Aim Structure and Results (目的, 組織 및 成果)는 CEE의 目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CEE의 目的是 低品質의 器機의 使用에 의해 발생하는 危險, 特히 生命 및 火災의 危險으로부터 大衆을 지키기 위하여 特定의 電氣器機가 적합해야 할 規格을 정해야 한다. CEE는 家庭 및 職場等에서 使用하는 電氣器機를 대상으로 한다. 또 CEE는 각 회원국가에서 施行하는 國가의 規制를 가능한 한 統一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이것은 國際貿易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特히 強制的規制가 實시되고 있는 國가에 대해서 중요하다. 또 目的을 達成하는 方法으로써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CEE는, 當該議題에 대해서 國際的인 合意를 얻은 規格을 發行한다. CEE規格을 회원국에 強要하는 것은 아니지만 國가의 제도를 作成하는데 있어서 모든 規格을 調和시켜서 國際貿易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더욱이 CEE는 規格에 適合하여 承認된 器機를 識別하는 簡單한 方法을 使用者에게 나타내도록 한다. 이 見地에서 CEE마크라고 稱하는 適合마크를 정할것을 제안한다. 이 CEE마크 決定에 이르기까지 器機의 承認을 용이하게 하는手段으로써 회원국에서 작성된 試驗認證書를 製品이 해당 CEE規格에 適合한 證據로써 받아들이는데 同意하는 制度를 運用한다.」

이 制度를 管理하기 위하여 Certification Body (CB)를 設立하고, 그 상세한 것을 CEE Pub.21 Rules for the CEE Certification System(CEE 認證制度에 관한 規則)에 規定하고 있다.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國際電氣技術委員會)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CE는, 全世界에 걸쳐서 電氣分野에 있어서 國際規格에 關한 기관이고, CEE는 公衆安全에 關係하는 特別한 規格을 基초하는 歐洲의 地域機關으로서, 이 양기관이 協力하는 것은 당연하다. 1934年, IEC의 電氣附屬品에 관한 TC(專門委員會)가 설치되었을때 IFK의 會長 Van Staveren 委員長을 초빙하여 그 골격이 1947年에 작성되었다. 이것은 IEC와 CEE間의 協力에 관한 公式的인 同意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同意에 의해 重複은 피하고, 2機關의 協力作業은 용이해지고, 兩機關에 共通되는 規格을 發行하는 結果가 되었다.

設立의 초기에는 CEE가 必要로 하는 試驗때문에 使用 가능한 安全規格의 設定에 그다지 협력적이지 않았던 IEC도 時間의 경과와 함께 협력하게 되고, 1948年 CEE와 IEC는 협정을 맺어 IEC國內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에 노력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 1) CEE加盟代表者와의 密接한 關係의 確立
- 2) 情報交換의 改善
- 3) CEE規格에 일치시키는 努力

이 結果 1952年, IEC規格 65「家庭用 또는 同等의 場所에서 使用하는 器機로서 電源動作電子器機 및 그 關連器機」는, CEE Pub.1(第2版)이라고 決定되었다. 1966年에는 IEC-CEE 合同規格를 作成하기 위하여 더많은 토의를 하고, 作業의 重複을 피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여 認證制度는 CEE

에 의해 承認된 IEC規格에 의할것, 이것은 同一規格이라도 별도로 發行할것, CEE와 IEC와의 連結을 보다 密接하게 實시할것 등이 決議되었다.

1974年 봄의 CEE總會에서 CEE의 長期政策에 대해서 CEE는 認證制度의 實施에 전념하고 이 制度에 必要한 規格의 作成은 가능한 IEC에 맡겨져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것에 근거하여 이 方針을 實施하기 위한 作業반(Working Group)이 설치되고 檢討의 結果는 1978年 봄의 CEE總會에서 採擇되어, 1980年1月1日, CEE Statutes(CEE 規定), Rules of Procedure(施行規則) 및 Pub.21 Rules for the Certification System(認證制度에 관한 規則)의 개정, 實시가 이루어졌다. 이것에 의하면 명칭은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Conformity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國際電氣器機適合證明委員會)略稱 CEE 또는 CEEel이라고 개정되고 또 目的도 「家庭 및 工場等에서 使用하는 電氣器機의 安全規格의 調整統一를 容易하게 한다.」에서 「家庭, 事務所 및 工場等에서 使用하는 電氣器機의 安全에 關한 國際的인 適合證明을 促進한다.」로 개정되었으며 會員資格도 歐洲의 自治國으로 한정된 것이 全世界的으로 그 國가의 電氣安全에 關한 規格, 規則等을 發行하고 直接 또는 間接으로 電氣器機의 試驗을 行하고 있는 國가의 기관에 대해서 개방되고 1국에 있어서 1기관으로 개정되었다. 또 從來에 安全規格을 作成하던 技術委員會를 廢止하고 주로 IEC규격을 適合證明으로 使用하는 일의 適否에 대해서 검토하는 諮問事務局을 설치하였다.

이 동안에 더욱 CEE와 IEC와의 議論은 진행되어 今後의 費用의 節減 및 認證活動의 簡素化를 위하여 CEE를 IEC에 통합하게 되고, 最終的으로 IEC는 1985年5月의 몬트리올 大會에서 合併을 承認하고, CEE는 同年 9月, 코펜하겐 總會에서 解

散을 決議하였다. 이것에 의해 CEE의 지금까지의 運營體系는 당분간 현상대로 IEC에 編入되고, 그 후부터는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to Standards for Safety of Electrical Equipment(IEC電氣器機 安全規格適合試驗制度-略稱 IECEE)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IECEE가 CB Scheme 때문에 制定한 발간목록(Publication List)은 CB會報(CB Bulletin)에 발표되어있으며, 參考로써 1993年 2月 現在의 CB Scheme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된 IEC規格 및 CEE規格 리스트를 表1에 표시하였다.

또 1993年2月現在의 IECEE會員機關은 35個國이며 그중에 CB參加 회원은 우리나라를 包含하여 30個國으로 되어있다. 또 各國의 認證機關 目錄은 表2와 같다.

3. IECEE의 組職과 制度

IECEE의 組職에 대해서 그 Basic Rules and Rules of Procedure of the System(基本規則 및 施行規則)에 근거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制度의 目的是 IEC의 監督하에서 通常, 家庭, 事務所, 工場 및 同等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電氣器機의 通商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그 목적 때문에 Scheme of the IECEE for Recognition of Testing to Standards for Safety of Electrical Equipment-CB Scheme(電氣器機의 安全規格에 근거한 試驗結果의 認證에 관한 IECEE Scheme-略稱 CB Scheme)을 運用하고 이 制度에 의해 承認된 IEC 安全規格에 의하여 實시한 試驗認證書를 加盟회원 機關이 原則的으로 再試驗하지 않고 承認하는 것이다.

i) 制度는 IEC國內委員會가 存재하는 國가에 開放되어 있고 會員 機關으로써는 IEC國內委員會

또는 IEC國內委員會가 IEC에 通知한 機關이 加盟할 수 있다.

組職으로써는

Management Committee(運營委員會)

Committee of Certification Bodies(認證機關委員會-CCB)

Committee of Testing Laboratories(試驗所委員會-CTL)

Secretariat(事務局)

으로 구성되었고 이 制度運用의 일체의 責任은 IEC委員會의 하나인 IEC總會의 監督하에 있는 運營委員會에 위임되어 있다.

運營委員會는,

各 會員 機關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

本制度의 委員長

本制度의 副委員長(投票權 없음)

本制度의 會計(投票權 없음)

認證機關委員會의 委員長과 幹事(投票權 없음)

試驗所委員會의 委員長과 事務局의 代表者(投票權 없음)

AOCS(IEC安全諮詢委員會)의 委員長(投票權 없음)

IEC事務總長(投票權 없음)

으로 구성되고 적어도 년 1회의 會合을 갖고 다음의 事項에 대해서 決定을 행한다.

(1) IEC總會로 提出하고 議決을 요구하는 사항

Basic Rules(基本規則)의 改正

制度의 役員(委員長, 副委員長 및 會計)의 任命

制度의 豫算

(2) 運營委員會의 決定事項

基本規則에 근거하여 施行規則의 承認

CB Scheme의 規程과 施行規則의 承認

本制度에서 適用하는 器機의 範圍

各 適用範圍內의 器機에 適用하는 規格

CB Scheme에의 加盟

認證機關委員會의 委員長 및 副委員長의 任命과 幹事任命의 確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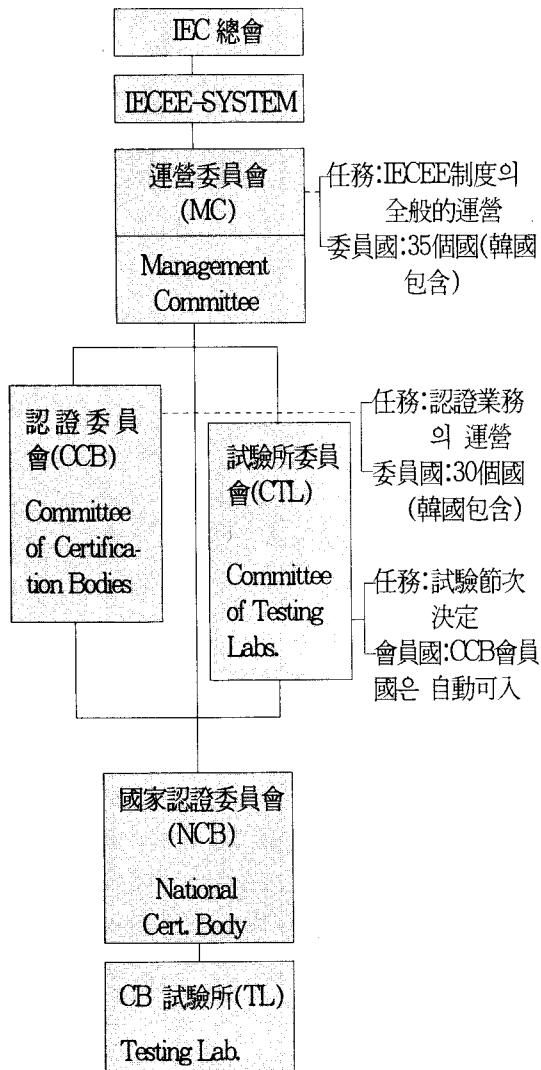
CB Scheme 試驗所의 承認 또는 否認

CB Scheme 提訴委員會의 委員長과 회원의 임명

試驗所委員會의 委員長과 事務局의 任命

그밖에 재무에 관한 사항 등

《IECEE의 組織》



認證機關委員會(略稱 CCB)는 CB Scheme의 運用을 管理하고, 運營委員會에 대해서 責任을 갖는다. CCB의 役員은 委員長, 副委員長 및 幹事로 되어 있고, 이 제도의 會計가 CB Scheme의 會計도 擔當한다. 그 나라의 National Certification Body(國家認證機關-略稱 NCB)가 있고, CB Scheme에 관한 規則과 절차의 規定에 의하여 CB認證書를 承認할 용의가 있는 회원 機關은 CB Scheme에 加盟할 수가 있고, 本制度의 會員의 支持가 4/5이상 있으면 承認된다. CCB의 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CCB에 의해 指名을 받아서 運營委員會에 의해 任命되며, 또 幹事는 CCB에 의해 任命되고, 運營委員會에 의해 確認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試驗所委員會(略稱 CTL)는 이 制度에서 사용하도록 承認된 규격에 대해서 試驗의 細則과 試驗方法 및 試驗機器에 관한 疑問點에 대해서 처리한다. CTL의 目的은 試驗結果의 재현성을 보다 좋게 하는 일과 試驗所間의 긴밀한 協調를 促進하는 것이다. CTL의 委員長 및 事務局은 CTL에 의해 指名되고, 運營委員會에 의해 任命된다. 이 制度의 멤버 기관은 CTL會議에 出席 가능하지만 參加者は 회원 기관에 의한 任命이 必要하다.

이 制度에서 使用하는 規格은 運營委員會에 의해 承認된 IEC規格을 사용하는 것을 基本으로 한다. 必要한 IEC規格이 없는 경우, 運營委員會는 IEC의 TC(專門委員會) 또는 SC(分科委員會)에 속히 준비하도록 要請하고 當該事項을 審議하는 專門委員會가 없는 경우는 IEC理事會에 그것을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經過措置로써, 이 制度가 발족된 시점에서 CB認證書의 基本으로 사용되고 있던 CEE規格은 運營委員會에서 각 規格에 대해서 決定한 期間中에는 使用을 계속할 수가 있다. 그리고 CEE規格은 1990年 1月 全面적으로 使用을 중지하도록 합의되었다. (IEC規格의 整備가 늦

어지고 있기 때문에一部規格에 대해서는 延長使用하게 되었다.)

4. CB Scheme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Scheme of the IECEE for Recognition of Results of Testing to Standards for Safety of Electrical Equipment-CB SCHEME(電氣器機의 安全規格에 의한 試驗結果의 承認에 관한 IECEE Scheme—약칭 CB Scheme의 규정 및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CB Scheme은 電氣器機를 安全規格에 의거하여 試驗한 결과,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文書에 의해서 國際貿易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설치된 제도이고, 이 文書는 CB 認證書이라고 칭하고 국가의 적합승인 또는 適合 마크 使用을申請할 때에 유효하다. CB Scheme은 이 制度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規格의 適用範圍에 포함되는 電氣器機에 대해서 參加하는 회원 기관이 4이상 있는 경우에 運用된다.

4.1 CB Scheme에의 加盟申請

CB Scheme에의 加盟을 希望하는 나라의 회원 기관은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 신청서를 IECEE의 事務局에 제출하고 이 申請은 運營委員會에서 심의된다.

- 會員一機關이 CB Scheme의 規則 및 施行規則을 준수하겠다는 표명.
- 會員一機關이 CB 認證書를 承認하는 뜻의 표명
- 채택할 예정인 CB Scheme에 사용할 承認規格의 리스트 채택예정일 및 그 나라의 deviation(差異)와 limitation(制限).
- 上記規格에 적용되는 기기에 대해서 그 나라에 있어서 試驗과 認證業務에 관한 說明과 다

음 事項에 대한 정보

- 規格化, 試驗 및 認證業務에 관한 責任
- 各段階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절차
- 情報提供에 도움되는 문서
- 試驗所의 技術的能力
- CB認證書의 수령에 관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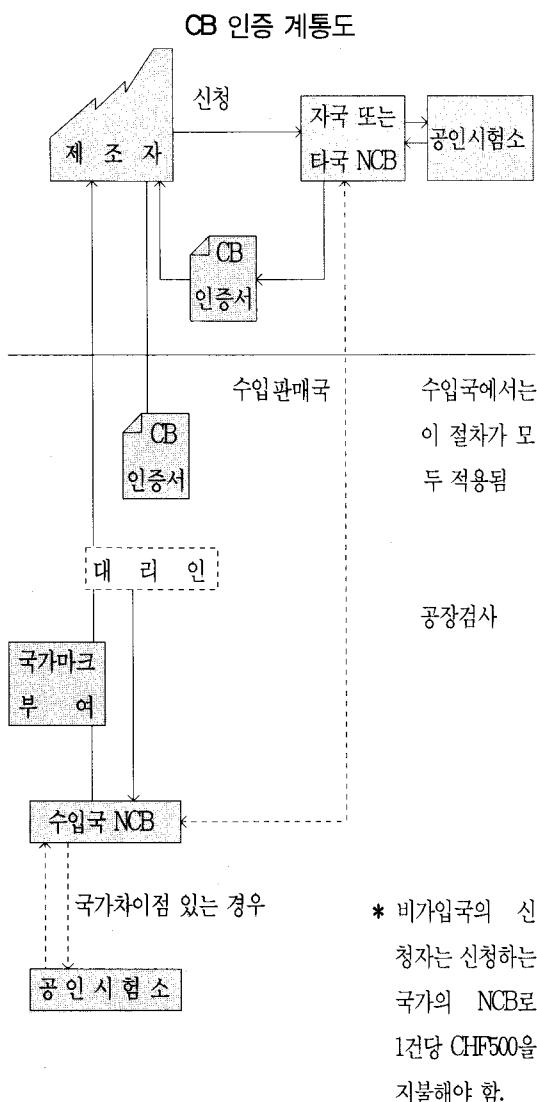
4.2 CB試驗所의 認定

CB Scheme에의 加盟이 承認된 나라의 회원 기관은 IECEE事務局 앞으로 CB Scheme을 채택하는 器機에 대해서 CB試驗所로서의 認定을 要望하는 申請書를 提出한다. 認證機關委員會는, CB試驗所中에서 임명한 3명의 技術者에 의해, 當該試驗所의 試驗設備等에 대해서 檢查를 행하고 그 報告를 받아서 運營委員會에 勸告를 提出한다. 이 勸告가 인정하여도 좋다는 내용이고, 더욱 CB Scheme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과 調和된 國內規格을 준비하여 試驗所가 해당제품에 대해서 國內申請을 2年間 10件 이상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발급 및 인정 NCB(Issuing and Recognizing NCB)로 인정되어 바로 신청 규격에 대해 CB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試驗處理의 실적이 없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적어도 동일 규격에 대해 3회 이상의 시험을 하여 기승인된 다른 발급 및 인정 NCB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試驗節次 및 規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當該試驗 NCB는 CB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발급 및 인정 NCB로서 인정되게 된다.

4.3 CB證明書의 取得節次

該當規格에 관한 CB制度에 參加하고 있는 발급 및 인정 NCB가 존재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제조자는 자국내에 있는 NCB로 신청가능하며 當該器機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NCB에申請하여도 좋다. 上記以外의 국가에 거주하는

제조자는 가입국의 제조자와 신청절차는 같지만 추가요금(CHF500/건당)을 해당 NCB로 납부해야 한다.



4.4 국가의 인정 또는 적합 마크의 취득

CB認證書所持者는 該當規格에 대해서 CB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NCB에 대해서 이認證書를 근거로 국가의 인정 또는 적합 마크 취득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신청은 試驗成

績書를 포함 CB認證書 사본과 별도의 要求가 있을 경우 1개 또는 여러개의 試驗品을 送付하여야 한다.

各國의 NCB는 該當規格에 適合한 器機인가 어떤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기의 一部 또는 全部에 대해서 試驗을 실시할 수가 있다.

4.5 CB Bulletin(CB會報)

CB Bulletin에는 CB Scheme에 관한 다음의 情報가掲載되고 通常 年3~4回 發行된다.

- 制度에 使用 가능하도록 承認된 규격
- CB認證書의 리스트
- 各國이 채택을 表明한 規格에 대한 deviation (差異)와 limitation(制限)

5. 우리나라의 참여

우리나라는 生產技術研究院(KAITECH)이 工業振興廳과 함께 수년간 IECEE총회에 준회원으로 참가하면서, 국내업체의 EUROPE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CB Scheme에 가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수출품에 대한 국내규격을 IEC규격과 비교, 검토하여, 1989년 IECEE총회에 가입을 신청, 총회에서 한국의 KAITECH를 CB Scheme의 NCB(국가인증위원회) 및 TL(CB시험소)로 지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2월에 KAITECH의 TL 승인을 위한 3개국/3인 심사단의 1주일간의 심사에 통과하여 1990년 6월 중국 광주에서 개최된 IECEE-MC(운영위원회)총회에서 가결공표되었으며 1993년 12월말 현재 IEC 65, IEC 335, IEC 950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는 CB 인증획득을 위하여 외국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필요없이 국내의 KAITECH으로 신청하여 KAITECH의 시험

결과에 의거 CB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국가인증위원회의 공식명칭은 IECEE Council of Republic of Korea로 되어있다.

〈表 1〉 CB 인증제도에서 취급하고 있고 제품의 카테고리

번호	약자	원명칭	규격*	
			CEE	IEC
1	CABL	전선 및 코오드	-	[227] 245 (702) 799
2	CAP	부품으로서의 캐패시터	-	252, 384, (566), 1048
3	CONT	기기 스위치 및 가정용 전기기구의 자동 조정기류	24	328 730, 934, 1058
4	HOUS	가정용 기기	10, 11	[335], 342 378, 967
5	INST	설치용 악세서리 및 연결 기구류	(5) 7 (17) -	1011 884(83) 309 [320], 423, 439 614 669, 670, 685, 799, 974, 998, 999
6	LITE	전구류	(12) (12) (13) (12) -	(82), (458) 155 238 400 570 598, 920, 968, 901, 920, 922, 924, 526, 928, 1046, 1052
7	MEAS	계측기기	-	348, 414, 1010
8	MED	의료용 전기기기	-	601
9	OFF	정보처리기기 및 사무용기기	(10p)	380, [950]

10	POW	저 전압, 고 전력 스위칭 기기	-	158, 292, 408, 947
11	PROT	설치용 방폭 기기	(16) (19)	127, 257 269 898, 1008
12	SAFE	안전 트랜스포머 및 유사기기	(15)	27 755 742
13	TOOL	휴대용 공구	20	745, 1029
14	TRON	여흥용 전자기기	(1,33)	[65], 491

* ()은 CB인증제도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규격을 또는 폐기된 규격을 의미한다.

〈표2〉 각국의 인증기관(시험소) 목록

Country National Certification Body

AT, Austria	Oesterreichischer Verband für Elektrotechnik (OVE) Eschenbachgasse 9 A-1010 WIEN Telephone: +43(1)587 63 73 Telex: +43(1)567 408
AU, Australia	Standards Australia P.O.Box 1055 STRATFIELD NSW 2135 Telephone: +61(2)746 4900 Telex: +61(2)746 8460
BE, Belgium	Comité Electrotechnique Belge (CEBEC) Rodestraat 125 B-1630 LINKEBEEK Telephone: +32(2)380 85 20 Telex: 62834 (CEBEC B) Telex: +32(2)380 61 33
CA, Canad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178 Rexdale Blvd. Rexdale (Toronto), Ontario CANADA M9W 1R3 Telephone: +1(416)747 4236 Telex: 06-989344 Telex: +1(416)747 4287

National Certification Body			
CH, Switzerland	<p>Schweizerischer Elektrotechnischer Verein (SEV) Prüfstelle Zurich(P-ZH) Postfach CH-8034 ZURICH</p> <p>Telephone: +41(1)384 91 11 Telex: 81 74 31 (SEV CH) Telefax: +41(1) 422 14 26</p>	ES, Spain	<p>Asociacion Electrotécnica y Electronica Espanola(AEE) Francisco Gervas 3 E-28020 MADRID</p> <p>Telephone: +34(1)616 00 18 Telex: 48476 (LAASE) Telefax: +34(1) 616 23 72</p>
CN, China	<p>China Commission for Conformity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CCEE) 2 Shoudi Tiyuguan Nanlu 100044 BEIJING</p> <p>Telephone: +86(1)832 3439 Telex: 222295 RIMST CN Telefax: +86(1) 832 08 25</p>	FI, Finland	<p>Electrical Inspectorate Sätkinientie 3 P.O.Box 21 FIN-00210 HELSINKI 21</p> <p>Telephone: +358(0) 696 31 Telex: 122877 (SETISF) Telefax: +358(0) 692 5474</p>
CZ, The Czech Republic	<p>Elektrotechnicky zkusebni ustav Post Office 71 CS-171 02 PRAHA 8-TROJA</p> <p>Telephone: +42(2)6441 0233 Telex: 122880 (EZUC) Telefax: +42(2) 6641 0037 +42(2) 6641 0070</p>	FR, France	<p>Union Technique de l'Electricité (UTE) Cedex 64 F-92052 RARIS LA DEFENSE</p> <p>Telephone: +33(1) 46 91 11 11 Telex: 620816 (CEFUTIE F) Telefax: +33(1) 47 89 45 87</p>
DE, Germany	<p>VDE Prüf- und Zertifizierungsinstitut Merianstrasse 28 D-63069 OFFENBACH(MAIN)</p> <p>Telephone: +49(69)83 060 Telex: 4152796 (VDEPD) Telefax: +49(69) 83 06-555</p>	GB, United Kingdom	<p>British Electrotechnical Committe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 Park Street LONDON W1A 2BS</p> <p>Telephone: +44(71) 629 90 00 Telex: 266933 (BSILON G) Telefax: +44(71) 629 05 06</p> <p>Authority for the certification of equipment in their areas of responsibility is vested in the following National Certification Bodie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STA Certification Services Prudential Chambers 23/24 Market Place RUGBY CV21 3DU
DK, Denmark	<p>DEMKO Lyskaer 8 Postbox 514 DK-2730 HERLEV</p> <p>Telephone: +45(44)94 72 66 Telex: 35125 (DEMКОDK) Telefax: +45(44) 94 72 61</p>		<p>Telephone: +44(788) 578 435 Telex: 311794 (CHACOM G) Telefax: +44(788) 573 605</p>

National Certification Body		Telephone:	+353(1) 37 01 01
		Telex:	32501 (IIRS EI)
		Telefax:	+353(1) 36 98 21
2)	BEAB, British Electrotechnical Approvals Board Mark House, The Green 9/11 Queen's Road, Hersham WALTON-ON-THAMES Surrey, KT12 5NA Telephone: +44(932) 24 44 01 Telex: 8812027 (BEAB G) Telefax: +44(932) 22 66 03	IL, Israel	The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SII) 42 Chaim Levanon Str. IL-TEL-AVIV 69977 Telephone: +972(3) 646 5171/2 Telex: 35508 (SII IL) Telefax: +972(3) 642 7654
3)	BSI, Quality Assurance Certification and Assessment P O Box 375 MILTON KEYNES MK14 6LL Telephone: +44(908) 22 09 08 Telex: 827682 (BSI QAS G) Telefax: +44 (908) 22 06 71	IT, Italy	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à (IMQ) Via Quintiliano, 43 1-20138 MILANO Telephone: +39(2) 5073 1 Telex: 310494 (IMQ I) Telefax: +39(2) 5073 271
GR, Greece	The Hellenic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LOT) 313, Achamón St. GR-111 45 ATHENS Telephone: +30(1) 201 5025 Telex: 219670 (ELOT GR) Telefax: +30(1) 202 0776	IN, India	Bureau of Indian Standards Manak Bhavan 9, Bahadur Shah Zafar Marg New Delhi 111002 Telephone: +91 11 331 1192 Telex: 031-65870 bis nd Telefax: +91 11 3314062
HU, Hungary	Hungarian Institute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MEIH) Váci ut 48/a-b pfi 441 H-1395 BUDAPEST XIII Telephone: +36(1) 149 55 61 Telex: 224931 (MEIH) Telefax: +36(1) 129 06 84	IS, Iceland	The State Electrical Inspection (RER) Þósthólf 8240 IS-128 REYKJAVIK Telephone: +354(1) 814133 Telex: +354(1) 689256
IE, Ireland	The National Standards Authority of Ireland (NSAI) EOLAS, The Irish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Glasnevin IE-DUBLIN9	JP, Japan	IECEE Council of Japan c/o Japan Electrical Testing Laboratory 5-4-12, Yoyogi, Shibuya-ku TOKYO 151 Telephone: +81(3) 3466 5121 Telex: Telefax: +81(3) 3468 9090
		KR, Rep. of Korea	IECEE Council of Korea (Rep. of) Korea Academy of Industrial Technology (KAITECH) 222-13 Guro-Dong Guro-ku 152-650 SEOUL

National Certification Body	
Telephone:	+82(2) 860 1453
Telex:	K28456 (FINCEN)
Telefax:	+82(2) 860 1465
NL, Netherlands	<p>NVKema Dept KCS/EU Utrechtseweg 310 P.O.Box 9035 NL-6800 ET ARNHEM</p> <p>Telephone: +31(85) 56 28 50 Telex: 75132 (KLTI NL) Telefax: +31(85) 51 49 22</p>
NO, Norway	<p>NEMKO Gaustadalleen 30 P.O.Box 73, Blindern N-0314 OSLO 3</p> <p>Telephone: +47(22) 960 330 Telex: 18 12 88 (NEMKON) Telefax: +47(22) 69 86 36</p>
PL, Poland	<p>CBJW, Central Office for Products Quality ul Swietokrzyska 14B PL-00-050 WARSZAWA</p> <p>Telephone: +48(22) 27 70 71 or +48 (22) 26 67 65 Telex: 816196 Telefax: +48(22) 26 67 65</p>
RU, Russian Federation	<p>VNIIS Electrichesky 3 MOSCOW 123856</p> <p>Telephone: +7(095) 253 70 06 Telex: 411378 (GOSTSU)</p>
SE, Sweden	<p>SEMKO AB Torshamngatan 43, Kista Box 1103 S-164 22 KISTA STOCKHOLM</p> <p>Telephone: +46(8) 750 00 00 Telefax: +46(8) 750 60 30</p>
SG, Singapore	<p>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SISIR) Standards and Quality Division No. 1 Science Park Drive Singapore 0511</p>

US, USA	Telephone: +65 778 7777 Telefax: +65 776 1568
	USNC/IECEE c/o NEMA 2101 L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37

Telephone: +1 202 457 8400
Telefax: +1 202 457 8411

Authority of the certification of equipment in their areas of responsibility is vested in the following National Certification Bodies:

- 1) Dash Strauss & Goodhue
629 Massachusetts Avenue
Boxborough
MA 01719
- 2) ETL Testing Laboratories, Inc.
Route 11, Industrial Park
Cortland, NY 13045
- 3) MET Laboratories Inc.
914 W Patapsco Avenue
Baltimore, MD 21230-3432
- 4)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333 Pfingsten Road
Northbrook, IL 60062-2096
- Telephone: +1 508 263 2662
Telex: 317 632 3274
Telefax: +1 508 263 7086
- Telephone: +1 607 753 6711
Telex: +1 607 756 9891
- Telephone: +1 410 354 3300
Telex: +1 410 354 3313
- Telephone: +1 1708 272 8800
Telex: +1 708 272 8862
- SR YU, Yugoslavia
Federal Institution for Standardization
Department of Quality and Certification
Kneza Milosa 20
YU-11000 BELGRADE
- Telephone: +38(11) 657 523
Telex: 12089(JUS YU)
Telefax: +38(11) 23 51 036

전안